





[별지 제1호도식] <개정 2020. 6. 1.>





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1. 정표찰(正標札)

가. 규격: l (리터)는 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컨테이너·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정표찰은 1.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형상

정표찰 1		정표찰 1.4		정표찰 1.5		정표찰 1.6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바탕	주황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문자	흑색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등급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정표찰 2.1 (선택가능)		정표찰 2.2 (선택가능)		정표찰 2.3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적색	바탕	적색	바탕	초록색
그림	흑색	그림	백색	그림	백색
숫자	흑색	숫자	백색	숫자	백색
					
구분	색상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바탕	초록색	바탕	백색
그림	흑색	그림	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3 (선택가능)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적색	바탕	적색
그림	흑색	그림	백색
숫자	흑색	숫자	백색

정표찰 4.1	
구분	색상
바탕	적색
띠	백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4.2		
구분	색상	
바탕	위	백색
	아래	적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4.3 (선택가능)			
구분	색상	구분	색상
바탕	청색	바탕	청색
그림	흑색	그림	백색
숫자	흑색	숫자	백색

정표찰 5.1	
구분	색상
바탕	노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5.2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위	적색
	아래	노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5.2 (선택가능)		
구분	색상	
바탕	위	적색
	아래	노랑색
그림	백색	
숫자	흑색	

정표찰 6.1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정표찰 6.2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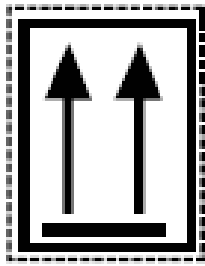
정표찰 8		
구분	색상	
바탕	위	백색
	아래	흑색
그림	흑색	
숫자	백색	

정표찰 9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띠	흑색
숫자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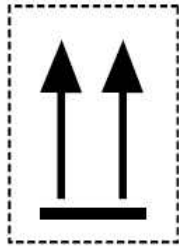
정표찰 9A	
구분	색상
바탕	백색
띠	흑색
그림	흑색
숫자	흑색
※ 리튬배터리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정표찰이며, 컨테이너 부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부표찰(副標札)

가. 직립 부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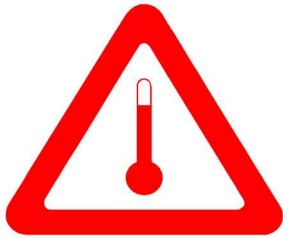


또는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또는 적색
※ 이 부표찰의 크기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할 것	
※ 외곽 띠는 선택사항임	

나. 고온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적색
외곽 띠	적색

※ 이 부표찰은 정삼각형으로서 각 변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해양오염물질 부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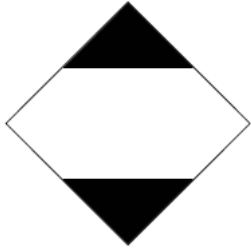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부표찰은 250밀리미터 ×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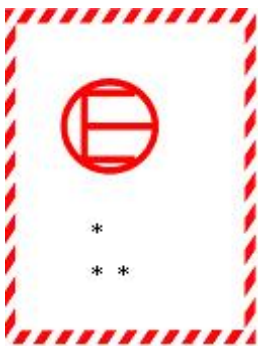
라.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위	흑색
	중간	백색
	아래	흑색

-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 ※ 만약 포장화물의 크기가 작다면 이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50밀리미터 × 50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로 축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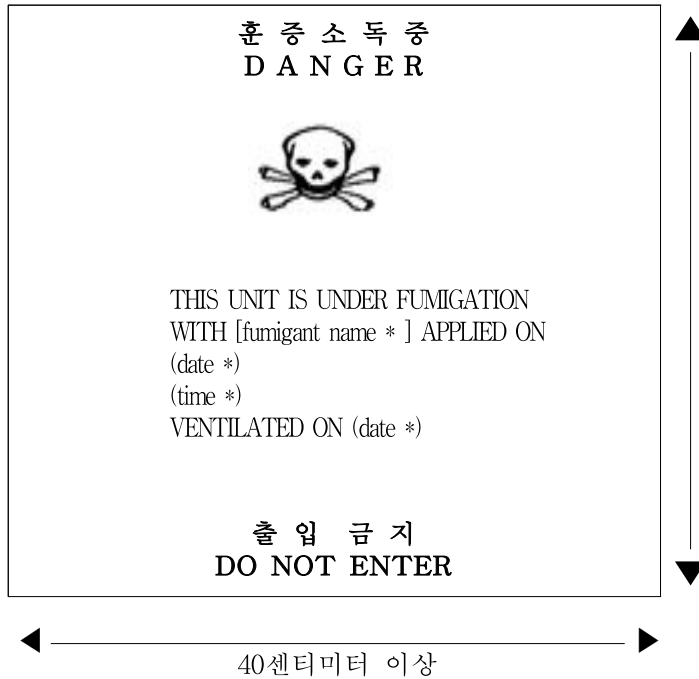
마. 극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또는 적색
*에는 위험물의 등급을 나타내야 함 **에는 화주 또는 송하인의 명칭이 포장화물의 다른 곳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명칭을 나타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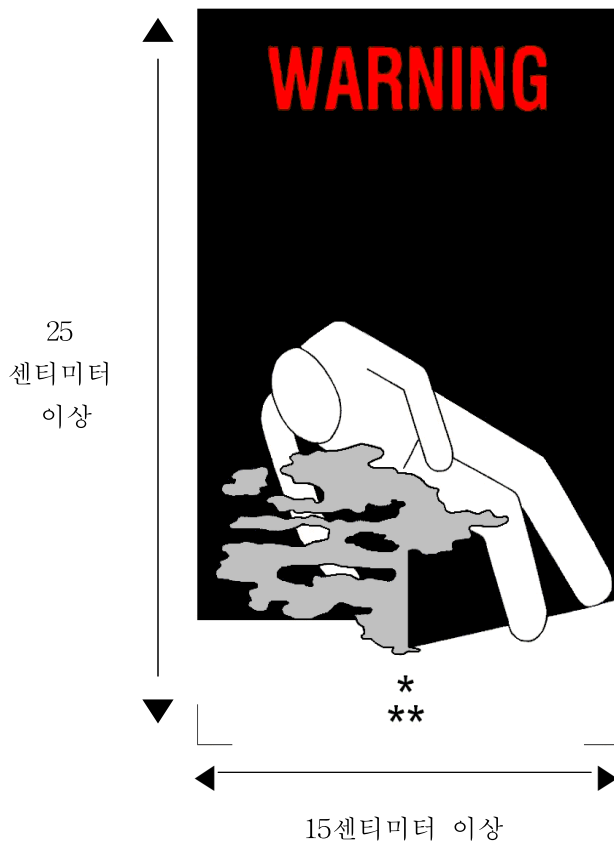
- ※ 용기·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바. 훈증소독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문자	흑색
*에는 훈증소독약품의 명칭, 훈증소독을 한 날짜·시간 및 환기를 한 날짜를 각각 적을 것	
※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사. 냉각제 주의 부표찰



구분	색상
경고문자	적색 또는 백색
바탕	흑색
사람	백색
연기	회색
*에는 냉각제의 제품명을 한 줄로 적을 것 **에는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적을 것	
※ 글자의 높이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아. 리튬배터리 부표찰



구분	색상
바탕	백색
그림	흑색
테두리 빗금무늬	적색
*에는 국제연합번호를 적을 것 **에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적을 것	

※ 표찰은 폭 120밀리미터, 높이 1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테두리 빗금무늬의 폭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화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치수를 폭 105밀리미터, 높이 74밀리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